



의안번호	제 2007 - 14 호
의 결 연 월 일	2007. 12. 10. (제5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차 례>

I. 팀별 회의	1
II. 전체 회의	5
III. 향후 일정	6





I. 팀별 회의

1. 제1팀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7. 11. 26.(월) 14:45 ~ 17:40
- 장소 : 대법원 505호 회의실

나. 참석자(5명)

- 전문위원 김한균, 신흥렬, 이주형, 이호중, 진선미(이상 가나다 순, 이하 같음)

다. 추가 보고서 제출 현황

주무전문위원	연구과제	제출 여부
이주형	호주 양형제도	초고 제출
서보학	독일 양형제도	제출
	일본 양형제도	제출

라. 회의 내용 및 결과

(1) 호주 양형제도

- 이주형 전문위원이 「호주의 양형기준제도(초고)」 발표
- 발표자는 호주 양형정보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영국은 보수적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
 - 이에 대하여 영국의 경우 「Auld Review」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양형개혁안 중 사법비용이 적게 드는 개혁안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발표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우 양형통계를 공개하

고 있는데 이는 양형심리절차가 충실히 진행되는 효과를 낳고, 양형편차를 해소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대하여 양형정보시스템은 양형편차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기존 양형실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양형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2) 독일 / 일본 양형제도

- 서보학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보완한 후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3) 설문조사 방안

- 용역 담당자인 김한균 전문위원이 설문조사 문항을 설명함
- 질문이 모호하거나 어려워 적절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김한균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운영지원단에서 최종적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한 후 전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양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2. 제2팀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7. 11. 23.(금) 14:00 ~ 15:50
- 장소 : 대법원 505호 회의실

나. 참석자(3명)

- 전문위원 박형관, 손철우, 최석윤

다. 추가 보고서 제출 현황

주무전문위원	연구과제	제출 여부
박형관	버지니아주 양형제도	초고 제출
조은경	버지니아주 재범예측	제출
	재범예측 관련 양형인자	미제출

라. 회의 내용 및 결과

(1) 추가 연구

- 추가 연구 진행 문제에 대하여 2가지 의견이 제시됨
 - 양형인자 추출의 기본 원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자는 의견
 - 미국 양형제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하자는 의견
- 총괄팀 또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2) 버지니아주 양형제도

- 박형관 전문위원이 「버지니아주 양형기준제(초안)」 발표
- 별다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3) 버지니아주 재범예측

- 주무전문위원인 조은경 전문위원의 불참으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3. 특별연구팀

가. 일시·장소

- 일시 : 2007. 11. 28.(월) 10:30 ~ 11:50
- 장소 : 대법원 505호 회의실

나. 참석자(5명)

- 전문위원 손철우, 이주영, 이천현, 이호중, 진선미

다. 추가 보고서 제출 현황

전문위원	연구과제	제출 여부
손철우 (개별보고서)	형벌의 목적과 양형기준의 목적	제출

라. 회의 내용 및 결과

- 손철우 전문위원이 「형벌의 목적과 양형기준의 목적」에 대한 개별보고서 발표
- 발표자는 형벌의 목적에 대한 절충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형벌의 목적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함
 - 이에 대하여 큰 원칙에서 중점적인 형벌 목적의 원칙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개별 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발표자는 양형기준의 목적으로, ① 불합리한 양형 편차의 해소, ② 공공의 안전 증진과 범죄 예방, ③ 책임비례성의 실현, ④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가지를 제시함
 -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독립된 목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양형기준 설정의 한계요소 내지 고려요소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향후 양형자료조사 결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다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II. 전체 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07. 11. 30.(금) 14:40 ~ 16:30
- 장소 : 대법원 505호 회의실

2. 참석자(9명)

- 전문위원 김인겸, 박형관, 손철우, 신광렬, 이주형, 이호중, 조은경, 진선미
- 운영지원단장

3. 주요 안건

- 외국 양형제도
- 형별의 목적과 양형기준의 목적
- 제2팀 추가 연구 과제
- 2008년도 연구계획 수립 방안

4. 회의 내용 및 결과

가. 외국 양형제도

- 1팀장(신광렬 전문위원)과 2팀장(박형관 전문위원)이 각 팀 논의 결과를 요약 보고
- 조은경 전문위원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양형 기준과 위험성 평가」 발표

나. 형별의 목적과 양형기준의 목적

- 특별연구팀장(이호중 전문위원)이 팀 논의 결과를 요약 보고

다. 추가 연구 과제

- 현재 미국 양형제도에 관한 연구가 종료 단계에 있는 2팀 등 각 팀별 추가 연구과제와 관련하여서는 특별연구팀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함
 - 각 전문위원은 자신이 담당한 국가 또는 미국 주(州) 양형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를 2008년 1월 초순경까지 진행
 - 제2팀 전문위원들도 우선 위 연구를 진행(위 연구 이후 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렬적으로 ‘양형인자 추출의 기본원칙’에 대한 연구를 진행)

라. 2008년도 연구계획

- 각 팀 논의 후 총괄팀에 팀별 연구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함
 - 총괄팀에서 팀별 연구계획안을 조정하고 전체회의 등을 통하여 연구계획안을 확정한 후 양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III. 향후 일정

- 제5차회의 결과에 따른 팀별 일정을 수립 중에 있음
 - 12월 중 팀별 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도 팀별 연구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
- 제6차 전문위원 전체회의는 2008년도 1월경 개최할 예정임